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8 - 10
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사유

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에 의한 정원을 정비하고, 구의회 사무국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원 조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('17.12.31.)에 따라, 정원의 총수를 1,413명에서 1,412명으로 조정(안 제2조, 별표 3)
 - 본청 일반직 5급 정원 1명 감(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)
- 나.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비율 조정 및 구의회 5급 정원 조정(안 별표 2, 3)
 - 별정직 직급별 비율 조정
 - 5급상당 이상 50% 이내, 6급상당 25% 이내, 7급상당 25% 이상
 - 구의회 별정직 5급 상당 1명 감 ⇒ 일반직 5급 1명 증

3. 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 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(정원의 관리)부터 제30조(정원의 규정)까지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8. 1. 4. ~ 1. 10. (제출의견 없음)
- 2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3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5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- 6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413명”을 “1,41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384명”을 “1,383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5급 상 당 이 상	6급 상 당	7급 상 당
비 율	(50)% 이 내	(25)% 이 내	(25)% 이 상

별표 3 중 직급별 총 계란, 일반직 계란, 5급 계란, 별정직 계란, 5급 상당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직급별	기관별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사업소	동
일반직 계		1,406	1,406				
5급		60	33	1	9	1	16
별정직 계		4	4				
5급 상당		2	1	1			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<u>1,413명</u>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: <u>1,384명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[별표 2]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</p> <p>3. 별정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5급상당 이상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6급상당</td> <td style="width: 25%;">7급상당</td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(60)% 이내</td> <td>(생략)</td> <td>(40)% 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 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분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 회 사무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건소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업소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413</td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413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반직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406</td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406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4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6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별정직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</td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 상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5급상당 이상	6급상당	7급상당	비율	(60)% 이내	(생략)	(40)% 이상	기관별 직급별	총 계	구분청	의 회 사무국	보건소	사업소	동	총 계	1,413	1,413							(생략)					일반직 계	1,406	1,406							(생략)					5급	60	34		9	1	16			(생략)					별정직 계	5	5					5급 상당	3	1	2						(생략)				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1,412명</u>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1,383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2]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</p> <p>3. 별정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5급상당 이상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6급상당</td> <td style="width: 25%;">7급상당</td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(50)% 이내</td> <td>(25)% 이내</td> <td>(25)% 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 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분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 회 사무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건소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업소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412</td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412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반직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406</td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406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3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6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별정직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</td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 상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5급상당 이상	6급상당	7급상당	비율	(50)% 이내	(25)% 이내	(25)% 이상	기관별 직급별	총 계	구분청	의 회 사무국	보건소	사업소	동	총 계	1,412	1,412							(현행과 같음)					일반직 계	1,406	1,406							(현행과 같음)					5급	60	33	1	9	1	16			(현행과 같음)					별정직 계	4	4					5급 상당	2	1	1						(현행과 같음)				
구분	5급상당 이상	6급상당	7급상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(60)% 이내	(생략)	(40)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구분청	의 회 사무국	보건소	사업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1,413	1,41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1,406	1,40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60	34		9	1	1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5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상당	3	1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5급상당 이상	6급상당	7급상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(50)% 이내	(25)% 이내	(25)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구분청	의 회 사무국	보건소	사업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1,412	1,4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1,406	1,40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60	33	1	9	1	1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4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상당	2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
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분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
 - 별정 직급 상향 조정(7급→6급)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 경미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안전행정국 총무과 전보아
연락처	02-3153-8216